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시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ments for Open Access Policies of Universities

정 경 희(Kyoung-Hee J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국내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
| 1. 연구내용 및 방법 | 1. 제출대상자료 및 제출자 |
| 2. 선행연구 | 2. 저작권 및 요구수준 등 |
| II. 오픈액세스 정책의 유형과 현황 | V.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구성 요소 제안 |
| 1. 오픈액세스 정책의 유형 | 1. 정책개발의 주체 및 강제성 |
| 2.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 2. 정책구성 요소 |
| III. 국외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분석 | VI. 결 론 |
| 1.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 |
| 2. 기관리포지토리 정책 | |

초 록

오픈액세스 정책은 각 기관의 오픈액세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수립시 규정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세 개 대학의 기관리포지토리 운영 정책과 ROARMAP에 등록된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문서를 분석한 뒤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시 규정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요소영역은 크게 제출자료영역, 제출시기, 제출자, 저작권, 요구수준, 예외, 이용, 오픈액세스 방법, 지원 등 9개영역이며 이들 각 영역에 대한 세부사항들 30개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오픈액세스, 오픈액세스 정책, 기관리포지토리, 대학의 오픈액세스

ABSTRACT

Open access policies are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open access projects in any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propose elements to consider for establishing open access policies of universities. The 3 university institutional repositories' open access policies in Korea and foreign universities' policies registered in the ROARMAP are analyzed. The major categories proposed in the study are materials, time of deposition, depositors, copyright, level of requirement, exemption, usage, options for open access, and support.

Keywords: Open Access, Open Access Policy, Institutional Repository, University'S Open Access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2009년도 교내연구비로 작성한 논문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khjoung@hansung.ac.kr)

• 접수일: 2010년 5월 21일 •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7일 • 최종심사일: 2010년 6월 25일

I. 서론

1. 연구내용 및 방법

국외에서 대안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로 등장한 오픈엑세스는 주로 대학 혹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전개되어 왔다. 대학이 오픈엑세스 정책을 채택하고 기관리포지토리를 구축하고, 오픈엑세스 출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나, 오픈엑세스 출판을 지원하는 등의 예가 그것이다. 특히 호주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가 대학 차원에서 가장 처음으로 강제형 오픈엑세스 정책을 채택한 이후 수많은 대학이 기관차원 혹은 단과대학이나 학과차원에서 오픈엑세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KAIST에서 기관리포지토리인 KOASAS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세 개의 기관리포지토리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에서는 국외의 상세한 오픈엑세스 정책 규정과는 달리 대학의 오픈엑세스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픈엑세스 정책이 구체화 되면 리포지토리에 기탁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자료의 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탁될 자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정할 수 있고, 자료기탁자가 리포지토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¹⁾ Arthur Sale은 기관리포지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의 7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픈엑세스 정책을 수립한 대학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기관리포지토리에 기탁된 자료의 양에서 훨씬 앞서고 있다는 분석을 통하여 오픈엑세스 정책이 기관리포지토리의 성공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²⁾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에서도 점차 대학이 오픈엑세스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 수립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학의 기관리포지토리 운영정책과 각국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문을 분석하고, 기존의 오픈엑세스 정책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 규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국내 대학의 기관리포지토리 운영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DSpace를 이용하여 기관리포지토리를 구축하고 있는 KAIST, 서울대, 인하대의 기관리포지토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인터뷰는 이메일로 2010년 4월 17일~2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국외의 대학 오픈엑세스 정책 분석은 ROARMAP(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y Material Archiving Policies)에 등록된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 문서 중 내용이 상세한 7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Kylie Pappalardo and Anne Fitzgerald, *A Guide to Developing Open Access Through Your Digital Repository*, <<http://www.oaklaw.qut.edu.au/node/32>> [cited 2010. 4. 22].

2) Arthur Sale, "Comparison of IR Content Policies in Australia," *First Monday*, Vol.11, No.4(2006), <http://www.firstmonday.org/issues/issue11_4/sale/> [cited 2009. 12. 10].

2. 선행연구

황혜경·김혜선·최선희(2004)의 논문³⁾은 KERIS의 디콜렉션, KISTI의 학회마을 서비스 등을 분석한 뒤 연구도서관, 기타 정보센터 및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저장하는 지식정보저장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연구자집단과 지식정보저장소 운영기관 및 정부와 후원단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2009년 조재인의 연구⁴⁾는 디콜렉션이 엄밀한 의미에서 기관리포지토리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기관리포지토리 지원 정책과 발전 현황을 분석한 뒤 국내의 기관리포지토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기관리포지토리를 성숙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학 기관리포지토리가 단순히 도서관의 사업이 아니라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이며 연구활동 등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본 연구가 대학이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리포지토리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대학의 구성원 특히 연구결과물을 생산하는 교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립하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관련된다. 이재민, 손청기, 이미영의 연구⁵⁾는 KAIST의 기관리포지토리인 KOASAS를 사례분석한 후 향후 아카이빙 대상 자료의 확대, 아카이빙 주체 확대, 시스템 개선, 국내외 타 기관리포지토리와의 연계 서비스, 지속적 홍보와 교육, 기관내의 제도화, 담당사서의 적극적 활동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외 연구로서 Kylie Pappalardo와 Anne Fitzgerald는 2007년 『디지털 리포지토리를 통한 오픈액세스 개발가이드』⁶⁾에서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 정책에서 밝혀져야 할 요소를 크게 기탁자, 자료, 리포지토리-기탁자 관계, 최종이용자, 기술적 조건, 지지 등 6가지로 설정하고, 이들 요소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설명하였다. Peter Suber 또한 기금지원기관과 대학이 오픈액세스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결정사항 12가지를 제시하고 이중 6개 요소의 경우 특히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시에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즉, 정책요구 수준, 오픈액세스 실천 방법, 기탁 장소, 오픈액세스 유형, 기탁대상물, 정책적용 대상 논문(즉, 기금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받은 논문), 유예기간, 예외규정, 기탁후 공개시점, 저작권, 오픈액세스 출판비용, 제재규정 등이 기금

3) 황혜경, 김혜선, 최선희, “오픈액세스기반 지식정보저장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15권, 제1호(2004), pp.91-116.

4) 조재인, “일본의 전개 양상을 통해서 본 한국 기관 레포지토리의 과제,”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2009. 3), pp.35-55.

5) 이재민, 손청기, 이미영, “국내 기관 레포지토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KAIST의 KOASAS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제39권, 제3호, pp.179-204.

6) Kylie Pappalardo and Anne Fitzgerald, *op. cit.*

7) Peter Suber, “Open Access Policy Options for Funding Agencies and Universities,” *SOAN*, 130(2009), <<http://www.earlham.edu/~peters/fos/newsletter/02-02-09.htm>> [cited 2009. 10. 20].

지원기관 및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수립에 공통으로 결정되어야 할 요소이며, 기탁장소, 기탁대상물, 교원의 옵트아웃⁸⁾ 허용, 대학 내에서 승진심사 등 다른 용도로 정책을 사용하는 것, 학위논문 에 대한 오픈엑세스 적용문제, 오픈엑세스 정책 채택의 결정 주체 등 여섯가지 요소는 대학의 오픈 엑세스 정책수립시 고려될 요소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오픈엑세스 정책요소를 좀 더 세분하여 국내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오픈엑세스 정책의 유형과 현황

1. 오픈엑세스 정책의 유형

가. Peter Suber의 7가지 유형

Peter Suber는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 수립시 지켜야할 세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⁹⁾ 첫째는 대학은 연구성과물을 오픈엑세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대학은 교원이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할 학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셋째는 대학이 교원의 논문 출판시 드는 동료심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을 다음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관리포지토리를 통한 오픈엑세스를 요청하고 독려하고, 출판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기관리포지토리를 통하여 오픈엑세스를 강제하고, 출판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다. 넷째는 기관리포지토리를 통한 오픈엑세스를 강제하고 교원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는 출판사에 논문을 출판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다섯째, 기관리포지토리를 통한 오픈엑세스를 강제하고 교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출판사에 출판하고 싶어할 때 옵트아웃을 허락하는 방식이다. 여섯째, 기관리포지토리에 기탁하도록 강제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저자나 기관이 허락을 얻을 수 있을 때 오픈엑세스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첫째에 다섯째, 여섯째를 혼합한 것으로 옵트아웃 방식으로 교원들에게 기관리포지토리를 통하여 오픈엑세스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일곱가지 유형의 오픈엑세스 정책 중 현재로서 앞서 세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 왜냐하면, 첫번째 유형의 경우 현재로서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강제가 아닌 권고이므로 첫 번째 원칙을

8) 기본적으로 모든 기탁물을 오픈엑세스 하되, 신청자의 저작물에 대해 오픈엑세스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9) Peter Suber, "Three Principles for University Open Access Policies," SOAN, 2008(4).

<http://www.arl.org/sparc/publications/three-principles-for-univ.shtml> [cited 2009. 12. 10].

위반하게 된다. 또한 세 번째 유형도 셀프아카이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첫 번째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네 번째 유형의 경우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학술지가 제한적이므로, 역시 두 번째 원칙을 위반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유형 역시 아카이빙에 대한 예외는 아니더라도 오픈액세스에 대한 예외를 둬으로써 첫 번째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모든 유형의 정책이 대학의 오픈액세스 실현에 있어 어떤 정도의 결함이 있을 것이다. Peter Suber는 교원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오픈액세스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들 유형중 현재로서는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유형이 비교적 결함이 적다¹⁰⁾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 세 유형의 경우 셀프아카이빙 자체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아카이빙된 자료가 오픈액세스 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으로서 다른 것보다 결함이 적은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 Stevan Harnad의 4가지 유형

한편 Stevan Harnad는 셀프아카이빙을 위한 정책 유형을 기탁시점과 접근시점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¹¹⁾하고 있다. 즉, 즉시기탁/선택적 접근형, 즉시기탁/즉시접근형, 즉시기탁/지연접근형, 지연기탁/지연접근형이다. 첫째 즉시기탁/선택적 접근형은 출판과 동시에 리포지토리에 기탁하되, 오픈액세스는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것은 출판사 엠바고에 부합하면서 가능한 빨리 리포지토리에 연구성과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많은 기관에 적절한 정책유형이라는 평가¹²⁾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즉시기탁/즉시접근형은 자료에 대한 즉각적 오픈액세스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학술지가 즉각적 오픈액세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유형은 저자가 출판할 수 있는 학술지의 선택을 제한시키게 된다는 단점을 가진다.¹³⁾ 출판 후 즉시 기탁하여 오픈액세스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학술지에 출판한 경우 이에 대한 예외를 옵트아웃 방식으로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이것은 더 이상 강제성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¹⁴⁾ 세 번째 즉시기탁/지연접근형은 접근을 지연시킬 수 있는 최대기간을 설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즉시기탁/선택적 접근형과 차이가 있다. 네 번째 지연기탁/지연접근형은 출판사의 엠바고기간이 끝난 후에 논문을 기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출판사 요구에 순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에게 편할 수 있지만, 오픈액세스가 지체되고, 출판 후 시간이 오래 지날 경우 저자가 논문을 기탁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¹⁵⁾

10) *Ibid.*

11) Stevan Harnad, "Which Green OA Mandate Is Optimal?" *Open Access Archivangelism*(2008, 12, 7), <<http://openaccess.eprints.org/index.php?/archives/494-guid.html>> [cited 2009, 12, 22].

12) Enabling Open Scholarship. *Basic Issues Involved in Wording an Institutional Open Access Policy*, <http://www.openscholarship.org/jcms/c_6224/basic-issues-involved-in-wording-an-institutional-open-access-policy> [cited 2009, 12, 20].

13) *Ibid.*

14) Stevan Harnad, *op. cit.*

다. 강제형과 자발형 오픈액세스 정책

오픈액세스 정책은 준수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형(mandatory)과 자발형(voluntary)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강제형 오픈액세스 정책은 연구자가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거나 기관리포지토리에 연구성과물을 기탁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자발형 오픈액세스 정책은 이를 권고하거나 요청하는 것으로 그치는 정책이다. 기관의 연구관리자들이 연구자들에게 오픈액세스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번거로움을 더하는 일이므로 관리자 차원에서도 자발적 정책은 효과가 없다. 또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자발적으로 아카이빙하는 비율은 약 15~20%에 불과하므로 자발적 정책에 의거한 기관리포지토리에 등록되는 연구성과물의 양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¹⁶⁾

강제형 오픈액세스 정책은 기관 내에서 채택되는데 시일이 걸리지만, 기탁율이나 참여를 높일 수 있다.¹⁷⁾ 2004년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오픈액세스 정책¹⁸⁾은 연구자들에게 NIH 기금을 받은 결과로 생산한 연구성과물을 NLM의 기관리포지토리인 PMC(PubMed Central)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에 따라 아카이빙 비율은 약 4%에 그쳤다. 그러나 2008년 NIH 기금을 받은 논문을 의무적으로 PMC에 기탁하도록 개정¹⁹⁾한 후 아카이빙 비율이 56%로 급상승하였다.²⁰⁾ 이것은 강제형 오픈액세스 정책이 자발형보다 오픈액세스 참여율을 높여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2.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ROARMAP(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y Material Archiving Policies)은 오픈액세스 정책을 기관(institutional), 학과/교원/단과대학/연구실(departmental), 기금지원기관(funder), 다기관(multi-institutional)별로 등록받아 링크정보와 통계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각 유형별로 정책으로 채택된 것뿐만 아니라 정책안도 등록되어 있다. 2010년 2월 25일 기준으로 총 206개의 정책과 19개의 정책안이 등록되어 있다. 기관오픈액세스 정책은 해당 기관차원에서 오픈액세스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총 86개의 정책과 5개의 정책안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14개 정책만이 연구소 정책이고, 나머지 72개는 대학의 정책이다. 학과/교원/단과대학/연구실 정책은 대학의 한 개 단과대학이나

15) Ibid.

16) Enabling Open Scholarship, *Open Access Policies f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http://www.openscholarship.org/jcms/c_6226/open-access-policies-for-universities-and-research-institutions?hlText=policie> [cited 2010. 2. 10].

17) Neil Jacobs ed., *Open Access: Key Strategic, Technical and Economic Aspects*(Oxford : Chandos Publishing, 2006), p.57.

18) Enhanced Public Access to NIH Research Information.

19) Revised Policy on Enhancing Public Access to Archived Publications Resulting from NIH-Funded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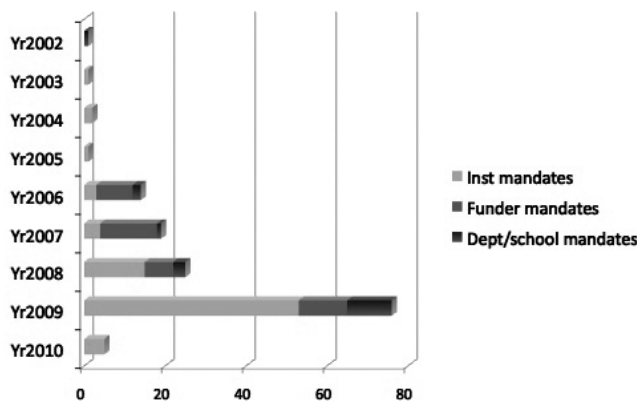
20) Enabling Open Scholarship, *Open Access Policies f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op. cit.

학과 혹은 연구실 차원에서 채택한 정책으로 총 18개가 있다. 대학에서 학위논문에 대해서만 오픈액세스를 요구한 정책도 60개가 있다. 결국 기금지원기관을 제외하고 오픈액세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대학임을 알 수 있다.

〈표 1〉 ROARMAP에 등록된 오픈액세스 정책 유형

정책유형	정책	안
기관	86	5
학과/단과대학/연구실	18	1
기금지원기관	42	7
학위논문	60	1
다기관	0	5
계	206	19

기관 오픈액세스 정책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핀란드 28개, 영국 17개, 미국과 호주 각 5개, 스위스 4개, 벨기에, 스페인, 인도, 러시아 각 3개, 노르웨이 2개, 중국,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스웨덴, 터키, 베네수엘라 각 1개, 국제적 기관의 오픈액세스 정책 2개로 우리나라의 기관오픈액세스 정책은 등록된 것이 없다. 년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1〉²¹⁾과 같다. 2003년 호주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채택한 정책²²⁾이 대학 전체 차원에서 채택한 최초의 오픈액세스 정책²³⁾인데, 이후 점차적 증가를 보이다가, 2009년 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년도별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21) *Institutional Self-Archiving Policy Commitment*,

〈<http://www.eprints.org/openaccess/policysignup/sign.php>〉 웹사이트에 제시된 그래프임.

22) *Policy F/1.3 E - print repository for research output at QUT*.

23) *Enabling Open Scholarship, Open Access Policies f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op. cit.*

Ⅲ. 국외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내용이 구체적인 오픈액세스 정책 7개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오픈액세스 정책문은 대학차원에서 구성원의 오픈액세스 실천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정책과 대학의 기관리포지토리 운영에 대한 세부적 정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구분하여 각 정책의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가. 교원에게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요구한 MIT 정책

MIT는 2002년에 DSpace를 개발한 뒤 DSpace@MIT라는 기관리포지토리를 운영해왔으며, 2009년 3월에 MIT 교원 만장일치로 “MIT 교원의 오픈액세스 정책(MIT Faculty Open-Access Policy)²⁴⁾”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MIT 교원에게 그들의 논문을 MIT가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교원들에게 MIT에 저작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MIT가 교원의 학술논문을 오픈액세스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을 요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채택됨에 따라 교원들은 학술논문 출판시 출판사와의 저작권 계약에서 자신이 MIT에 이러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 정책은 MIT 교원의 논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책이 채택되기 전에 출판된 논문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대학에 이러한 이용허락을 할 수 없는 경우 학장을 통하여 정책준수 예외 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MIT의 오픈액세스 정책문은 매우 간단하지만, FAQ²⁵⁾를 통하여 정책의 목표, 정책준수 방법, 정책 적용 범위, 면제요청 방법, 논문사용 방안, 정책의 영향, 기타 정보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중요 내용으로는 논문제출은 출판과 동시에 해야 하며, 제출대상 자료는 저자의 최종 원고이며, 기탁장소는 MIT@DSpace임을 정한 것 등이다.

24) MIT Faculty Open-Access Policy,
〈<http://info-libraries.mit.edu/scholarly/faculty-and-researchers/mit-faculty-open-access-policy/>〉 [cited 2010. 3. 20].

25) MIT Faculty Open- Access FAQ,
〈<http://info-libraries.mit.edu/scholarly/faculty-and-researchers/mit-faculty-%20open-access-policy/oa-policy-faq/>〉 [cited 2010. 3. 20].

〈표 2〉 MIT Faculty Open-Access Policy

항목	내용
저작권	• MIT 교원은 MIT에 자신의 논문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비배타적으로 허락해야함
제외	• 정책 채택 이전에 완성된 논문 제외 • 정책 채택 이전에 저작권 양도계약을 맺은 논문 제외 • 이 정책을 면제해 달라는 서면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학장이 면제할 수 있음
버전	• 논문의 최종 버전

나. Copenhagen Business School의 오픈액세스 정책

덴마크의 Copenhagen Business School(CBS)의 오픈액세스 정책²⁶⁾도 앞서 MIT의 정책처럼 CBS 교직원에게 기관리포지토리에서 교원의 연구성과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이 정책은 교원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CBS가 일상적으로 교원의 연구성과물을 기관리포지토리에 저장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이 교원의 연구성과물을 아카이빙 할 수 있다. 또한 출판사의 엠바고 기간을 최대한 1년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출판사가 기관리포지토리 기탁을 불허할 경우 개별 저자가 도서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3〉 The CBS Open Access Policy-2009

항목	내용	
정책 구성요소	배경, 정책의 원칙, 실행방법	
중요사항	대상자	• CBS 교원
	대상자료	• 교원의 모든 학술논문
	아카이빙	• 연구등록과정의 하나로서 도서관에 의해 아카이빙이 이루어짐. 도서관이 논문의 전문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연락함 •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OpenArchive@CBS에서 논문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저작권	• CBS 교원은 자신의 연구성과물이 기관리포지토리에서 이용될 수 있는 라이선스를 CBS에 주어야 함
	엠바고	• 출판사 엠바고는 최대 1년까지 인정할 수 있음
	예외	• 출판사가 기관리포지토리 기탁을 불허할 경우, 개별 저자가 도서관에 서면통지해야함

다. Univ. of St. Gallen

스위스의 Univ. of St. Gallen의 오픈액세스 정책²⁷⁾은 2008년 12월 15일 대학평의회가 채택한 정책으로 기본적으로는 기관리포지토리를 통한 셀프아카이빙을 권하고 있으며, 기관의 연구자들이 오픈액

26) *The CBS Open Access Policy-2009*, <http://uk.cbs.dk/research/menu/open_access_policy> [cited 2010. 4. 25].

27) *Regulations Concerning the Open Access Policy*,

<http://www.alexandria.unisg.ch/Regulations_Open_Access-Policy.pdf> [cited 2010. 4. 25].

세스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하지만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기탁해야 할 자료는 가능한 출판사 최종본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출판사의 엠바고 기간도 준수하고, 이 기간이 종료된 후 시스템상으로 자동적으로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 Regulations Concerning the Open Access Policy

항목		내용
정책 구성요소		• 오픈엑세스 의미, 용어정의, 연구자의무, 연구자권리, 효력일 등
연구자의무	서지데이터 준비	• 연구자들은 기관아카이브에 포스트프린트나 프리프린트에 대한 서지데이터를 포스트해야함
	이용권 보호	• 가능한 연구자들이 출판사와 계약에서 기관 아카이브에 무료 디지털 출판할 비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할 의무가 있음 • 출판사의 엠바고 기간은 준수함 • 향후 연구자들은 셀프아카이빙권을 보유해야함 • 출판사가 엠바고 기간 요구시, 이 기간 종료 후 시스템상으로 자연 관리되어 종료 후 바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원문이용	• 출판사 허락이 있을 경우, 포스트프린트를 기관아카이브 기탁 • 출판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탁 • 도서의 기고문, 주석, 도서는 대상이 아님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출판	•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하지만 요구하지는 않음
연구자의 권리	오픈엑세스원칙에 따른 출판	• 대학은 연구자들이 셀프아카이빙과 관련하여 출판사와 협정을 맺을 때 연구자를 지원할 것임 •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을 지원할 것임
기관 아카이브 운영		• 대학은 기관아카이브를 제공해야함
효력일		• 2009. 1. 1

2. 기관리포지토리 정책

가. Charles Sturt Univ.

2007년부터 시행된 호주의 Charles Sturt Univ.(CSU)의 “Policy for the CSU Institutional Repository²⁸⁾”는 CSU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형 정책이다. 이 정책문은 CRO(CSU Research Output) 리포지토리, 제출정책(기탁책임자, 기탁대상자료, 기탁제외 자료), 책임(기탁자, 리포지토리 운영자), 질적 보장 등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CRO 리포지토리 부분에서는 기탁대상물, 기탁대상자, 기탁된 자료의 이용방법, CRO가 출판기금스키마(Publication Grants Scheme)에서 기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제출정책 부분은 기탁대상자, 기탁대상물, 제외대상물로 세분하여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기탁대상자는 모든 CSU 직원과 학생들이며, CRO에 기탁할 대상물은 동료심사

28) CRO - Policy for the CSU Institutional Repository Home page,
 〈<http://www.csu.edu.au/research/publications/cro/policy.htm>〉 [cited 2010. 4. 20].

과정을 거쳐 수정된 교직원의 최종 출판전(pre-publication) 원고 전자파일, 출판사 허락을 얻을 경우 pdf 파일같은 출판된 원고, 최종 수락된 원고의 전자본이 없을 경우 CRO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세한 인용사항만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판형태별로는 연구논문, 발표문, 북챗터(출판사 허락한 경우에), 단행본(초록, 인용문만), 그 외 창작물, 간행된 연구보고서, 연구기반 프로젝트 산출물, 정부에 대한 보고서들이 포함된다. 또한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물 등 기탁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들도 예시하고 있다. 셋째, 기탁자의 책임 부분은 기탁자와 리포지토리관리자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기탁자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자가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기구로부터 기금을 받은 성과물에 대해서는 기금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탁해야 한다. 만일 엠바고 기간이 있는 자료를 엠바고 기간에 제출할 경우 관리자에게 알려, 해당 자료가 CRO의 특정 부분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리포지토리 관리자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탁된 아이템에 대한 안정적인 URL 작성, 기관리포지토리를 통한 논문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출판사의 정책 확인 및 준수, 최종이용자가 기탁자료를 복제, 출판, 전자적 전송, 배포할 수 있도록 저자가 이용자에게 비배타적 권리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 보안, 백업 및 보존을 위한 복제본을 유지할 것, 기관리포지토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출판시 요청하는 문구의 예를 저자를 위하여 제시해줄 것 등이다. 네 번째 부분은 질적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모든 제출물이 오픈엑세스되기 전에 규정을 잘 준수하였는지, 저작권과 출판사 라이선스 준수사항을 누가 확인할 것인지, 메타데이터 표준의 설정은 누가할 지에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표 5> Policy for the CSU Institutional Repository

항목	내용	
CRO 리포지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심사 받은 최종 원고를 출판결정 후 즉시, 의무적으로 CRO에 기탁 • CRO 자료는 출판사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두 오픈엑세스되어야 함 • CRO가 출판기금스키마(Publication Grants Scheme)에서 기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임 	
제출 정책	기탁자	• 모든 CSU 직원과 학생
	기탁대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심사 과정을 거쳐 수정된 교직원의 최종 출판전(pre-publication) 원고 전자파일 • 출판사 허락을 얻을 경우 pdf 파일같은 출판된 원고 • 최종 수락된 원고의 전자본이 없을 경우 CRO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세한 인용사항만을 제출 • 종류 : 연구논문, 발표문, 북챗터(출판사 허락한 경우에), 단행본(초록, 인용문만), 그 외 창작물, 간행된 연구보고서, 연구기반 프로젝트 산출물, 정부에 대한 보고서
	기탁제외자료	• 편집되지 않고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의견정도의 결과물, 비학술적인 결과물, 교육자료, 학생의 학위논문, 상업화할 자료, 문화적으로 민감한 자료, 비밀정보를 포함한 자료, 저자나 기관의 법적 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자료,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자료, 교재
책임	기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가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른 기구로부터 기금을 받은 성과물에 대해서는 기금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탁 • 엠바고 기간이 있는 자료를 엠바고 기간에 제출할 경우 관리자에게 알려, 해당 자료가 CRO의 특정 부분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함

항목		내용
책임	리포지토리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탁된 아이템에 대한 안정적인 URL 작성, 기관리포지토리를 통한 논문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출판사의 정책 확인 및 준수, 최종이용자가 기탁자료를 복제, 출판, 전자적 전송, 배포할 수 있도록 저자가 이용자에게 비배타적 권리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 보안, 백업 및 보존을 위한 복제본을 유지할 것, 기관리포지토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출판시 요청하는 문구의 예를 저자를 위하여 제시해줄 것
질적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제출물이 오픈엑세스되기 전에 규정을 잘 준수하였는지 평가될 것임 • CRGT(Center for Research and Graduate Training)가 질과 제출규정을 보장할 책임을 짐 • DLS(Division of Library Services)가 저작권과 출판사 라이선스의 준수사항을 확실히 할 책임을 짐 • DLS는 CRO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설정하여 제출

나. Queensland Univ. of Technology

호주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QUT)의 오픈엑세스 정책²⁹⁾은 대학 전체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강제형 오픈엑세스 정책이라는 의미가 있다.³⁰⁾ 이 정책은 QUT의 대학학술위원회(Univ. Academic Board)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정책 내용은 대학의 오픈엑세스 채택의 배경, 역할과 책임, 실제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책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와 자발적으로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아야 할 자료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QUT 정책문에는 리포지토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특이 사항이 있는데, 즉, 도서관의 책임자가 부총장을 통하여 대학연구혁신위원회와 연구사무소에 기관리포지토리 운영현황을 매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6〉 QUT ePrints Repository for Research Output

항목		내용	
정책구성요소		•배경, 정책, 역할과 책임, 보고, 운영가이드라인, 관련문헌, 수정이력	
정책	대상자료	의무기탁	• 동료심사된 연구논문, 학술대회 논문
		자발적 기탁	•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논문의 저자제출본 원고(동료심사에 따라 추가된 정오표와 함께 제출), 도서관 도서의 챗터, 동료심사되지 않는 연구문헌, 학술대회집의 기고문이나 챗터, ADT(Australasian Digital Theses)에 제출된 논문, 연구요소가 있는 창작물들, 연구데이터나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술서
	제외대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심사 후 오류가 있다고 지적된 논문 • 동료심사제가 없는 연구논문 등 • 비밀자료가 포함되었거나 상업화될 수 있거나 공표될 경우 법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버전	• 피어리뷰 이후 저자의 원고	
엠바고	• 12개월 이상의 엠바고를 요청할 경우 부총장에게 알려야함		

29) QUT ePrints Repository for Research Output,

http://www.mopp.qut.edu.au/F/F_01_03.jsp [cited 2010. 4. 20].

30) Enabling Open Scholarship, *Open Access Policies f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op. cit.

항목	내용
역할과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탁자 : 저자와 연구자 •QUT ePrints 운영자 : QUT 도서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서비스부서 책임자가 부총장을 통하여 대학연구혁신위원회와 연구사무소에 QUT ePrint 현황을 해마다 보고해야함
운영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도서관에서 저작권 계약에 대한 안내는 대학저작권사무담당자로부터 이용할 수 있음

다. Athabasca Univ.

캐나다 Athabasca Univ.의 오픈엑세스 정책³¹⁾은 대학 학술위원회가 승인한 것으로 자발형 정책이다. 정책문은 목적, 정의, 정책내용, 절차, 책임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준수 대상자는 대학의 교원, 연구 및 전문직들이며, 대상자료에 대한 상세한 예시 없이 출판된 논문의 전자 사본 한부로 정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출판사와 계약시 해당 논문의 오픈엑세스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 발표 이전에 출판된 간행물에 대한 기탁도 독려하고 있다.

<표 7> Open Access Research Policy

항목	내용								
정책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력일, 목적, 정의, 정책, 기타, 승인, 수정일, 절차, 책임부서 								
정책	<table border="1"> <tr> <td>대상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연구직, 전문직 </td> </tr> <tr> <td>대상자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된 논문의 전자 사본 한부 </td> </tr> <tr> <td>저장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 리포지토리 </td> </tr> <tr> <td>계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사와 계약에서 해당 논문이 오픈엑세스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 </td> </tr> </table>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연구직, 전문직 	대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된 논문의 전자 사본 한부 	저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 리포지토리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사와 계약에서 해당 논문이 오픈엑세스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연구직, 전문직 							
	대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된 논문의 전자 사본 한부 							
	저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 리포지토리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사와 계약에서 해당 논문이 오픈엑세스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탁대상자들은 저작권 소유자와 연락해서 해당 논문이 오픈엑세스 방식으로 출판될 수 있도록 요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는 AU 도서관과 상의 하에 결정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habasca 대학 학술위원회가 승인함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2년마다 정책을 검토해야함 								
책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서비스국 								

라. Roehampton Univ.

영국의 Roehampton Univ.의 오픈엑세스 정책³²⁾이 대학의 연구전략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 도서관연구자원위킹그룹을 구성한 뒤 이 기구에 의해 기관리포지토리를 개발하였다. 정책과 더불어 안내서가 있어 이를 통하여 정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기탁대상물로는 동료심사 후 저자 최종본 학술논문, 저술했거나 편찬한 도서의 저자 최종본, 도서의 챗터 저자 최종본, 기타 필름, 음악, 공연,

31) *Open Access Research Policy*, <<http://www.athabasca.ca/policy/research/openaccess.htm>> [cited 2010. 4. 23].

32) *Research Repository(RURR) Policy*, <<http://www.roehampton.ac.uk/research-and-business-development/services-for-research-and-enterprise-staff/university-procedures-and-committees/documents/RURR%20Policy%20%284.11.08%29.doc>> [cited 2010. 4. 25].

전시를 포함한 출판된 결과물이며, 저작권으로 인해 원문 전체 업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서지사항만 입력하도록 하거나 가능하다면 출판사 원문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 채택 이후 출판물을 업로드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가능한 많은 출판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이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기관리포지토리의 단계별 개발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8〉 Roehampton Univ. Research Repository(RURR) Policy

항목	내용
구성	• 서문, 단계별 과정, 책임
단계별 과정	• 1단계 : 기존 리포지토리 내용 검토 및 미출판자료의 적절성 논의 • 2단계 : 2008년 RAE에 제출된 모든 학술지 논문이 리포지토리에 업로드 될 것임 • 3단계 : 2008년 1월 1일 이래 출판된 연구결과와 학위논문이 리포지토리에 업로드 • 4단계 : 2008년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물들이 리포지토리에 업로드 될 것임
책임	• 연구전략위원회의 도서관연구지원위킹그룹이 리포지토리 개발을 감독하고, 편집위원회역할을 할 것임 • 편집위원회는 연간단위로 리포지토리 내용을 리뷰할 것임 • 서지 및 기술서비스 관리자가 리포지토리 관리자로 활동하고, 직원을 지원할 것임

IV. 국내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현재 국내 대학의 기관리포지토리는 KAIST의 KOASAS(KAIST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 서울대의 S-Space, 인하대의 INHA DSpace 세 개라고 할 수 있다. KOASAS는 2007년 시작된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DSpace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발한 리포지토리이다. S-Space는 2008년 12월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INHA DSpace는 2009년부터 운영되었다. 이들 세 개 대학이 각 기관의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를 운영하기 위한 대학차원의 오픈액세스 정책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S-Space의 경우 기관리포지토리 홈페이지에는 ‘이용자 안내문(User Guide)’³³⁾과 FAQ가 제공되고 있고, KOASAS 홈페이지에는 ‘제출대상논문’³⁴⁾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 대학의 기관 리포지토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픈액세스 정책문서 개발현황과 리포지토리 운영과 관련한 사항(즉, 기관리포지토리 제출대상자료와 관련된 사항, 제출자와 관련된 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 요구수준)을 서면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이를 제출대상자료 및 제출자와 저작권 및 요구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3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S-Space Team, S-Space User Guide, 2009,

〈http://s-space.snu.ac.kr/about/s-space_UserGuide.pdf〉 [cited 2010. 4. 24].

34) KOASAS Home page, 〈http://koasas.kaist.ac.kr/help-Kor/help_6.html〉 [cited 2010. 4. 24].

〈표 9〉 국내 대학기관리포지토리 운영관련 사항

항목		KOASAS	S-Space	INHA Space
정책문서		• 없음	• 없음	• 없음 • 학교차원의 정책문 준비중
제출 자료	제출 대상자료	•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 저작권을 보유한 출판전 논문 및 출판후 논문, 회의자료, 연구자료 및 프로젝트 보고서 등, 대학이나 학과 및 연구소, 학회 발간 학술지, 석박사학위논문, 강의노트, 학부생 연구자료	• 저작권을 보유한 논문, 연구보고서, 회의자료, 각 대학 및 학과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기술자료/도표/그림/도안/행사자료/역사자료 등
	버전(version)	• 정해진 것 없음	• 저작권을 소유한 판	
	파일 포맷	• PDF	• PDF이지만, HWP 파일의 경우 PDF로 변환	
	IR 운영 이전 출판 자료	• 대학 임용 이후 출판한 모든 자료	• IR 운영이전 발표된 자료도 대상임	
제출자	제출 대상자	• 교원	• 대학 구성원 모두	• 교원, 대학원생, 교직원
	제출 책임자	• 랩별 제출 담당자가 있음	• 책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음. 사서가 대신 제출하기도 함.	• 제출책임자는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사서가 제출
저작권 처리 의무		• 리포지토리 운영자가 처리	• 자료제출자와 리포지토리 담당자가 함께 저작권을 처리	-
요구수준		• 권고	• 권고	• 권고, 향후 의무화 예정

1. 제출대상자료 및 제출자

가. 제출대상자료

세 개 리포지토리 모두 제출대상자료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었다. KOASAS는 제출대상자료를 학술지 논문과 학술대회발표논문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S-Space의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출판전 논문 및 출판후 논문, 회의자료, 연구자료 및 프로젝트 보고서 등, 대학이나 학과 및 연구소, 학회 발간 학술지, 석박사학위논문, 강의노트, 학부생 연구자료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INHA DSpace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논문, 연구보고서, 회의자료, 각 대학 및 학과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기술자료/도표/그림/도안/행사자료/역사자료 등을 제출대상자료로 정하고 있었다.

제출대상이 되는 자료의 판(version)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KOASAS는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S-Space와 INHA DSpace의 경우 저작권을 소유한 판에 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제출대상이 되는 자료의 파일포맷은 KAIST의 경우 PDF로 정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두 곳은 기본은 PDF이지만, HWP 파일의 경우 PDF로 변환하고 있었다. 기관리포지토리를 운영하기 이전에 출판된 자료들에 대한 제출에서 KAIST의 경우 대학에 임용된 이후 출판한 자료 모두를 제출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두 대학도 리포지토리 운영 이전 발표 자료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나. 제출자

제출자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제출대상자는 KAIST의 경우 교원으로, S-Space의 경우 대학 구성원 모두를, INHA Space는 교원, 대학원생, 교직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제출대상자료를 제출할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KOASAS는 각 교원의 랩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랩별 제출 담당자가 있었으며, S-Space의 경우 책임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교수가 직접 제출하거나 연구실의 조교나 대학원생들이 제출하고 있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리포지토리 담당 사서가 대신 제출하기도 하였다.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도서관리시스템(SOLAS)에 있는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리포지토리에 업로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내 간행물의 경우 간행물 발행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을 받아 제출하고 있었다. INHA Space의 경우 현재로서는 수량이 많지 않아 도서관 사서가 직접 심사하여 제출하고 있지만, 제출책임자는 정해져 있었다.

2. 저작권 및 요구수준 등

가. 저작권

제출자료에 대한 저작권 처리사항에 대한 규정도 세 개 리포지토리에서 다소 달랐다. KOASAS의 경우 제출된 논문의 저작권 관련 사항은 리포지토리 운영자가 외국의 출판사저작권 정책을 통하여 확인하고, 제출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도로 처리할 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S-Space의 경우 자료제출자와 리포지토리 담당자가 함께 저작권을 처리하고 있었다. 즉, 담당사서가 국외 출판 논문인 경우 SHERPA/ROMEO 사이트에서 각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고, 국내 학술지 논문인 경우 기관리포지토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었다. 학내간행물에 대해서도 공문을 통하여 리포지토리에서 이용되는 것을 허락받고 있었다. 또한 저자가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등 국내 학술지 원문DB사에 S-space 기탁에 대한 허락을 받도록 요청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들 DB사에서 기탁을 모두 허락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발간된 학술지 전체를 업로드 할 경우 도서관이 DB회사에 기탁허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허락을 하고 있었다.³⁵⁾

나. 요구수준, 정책문서, 기관리포지토리의 이용

세 개 기관의 리포지토리에서 제출대상자들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의무화하지 않고 권유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의무화할 계획은 없었다. 다만 INHA Space의 경우 특정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으로 둘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세 기관 모두 현재로서는 기관리포지토리 운영과 관련한 정책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INHA Space의 경우 정

35) 김미향, "Institutional Repository 구축을 통한 정보자료 공유 및 Webometrics 순위 분석," 제3회 한국메타리터 센터 이용자그룹세미나 자료집(2010. 4. 23), p.116.

책문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문서를 학교 차원에서 합의된 것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KOASAS의 경우 향후 리포지토리 운영체계가 잘 잡히고 난 후 정책문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관리포지토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연구업적 평가 등의 용도로 리포지토리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V.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 구성 요소 제안

1. 정책개발의 주체 및 강제성

오픈엑세스 정책은 강제형일 때 효과가 있음을 앞서 오픈엑세스 정책 유형에서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오픈엑세스 정책이나 도서관에 의한 지지캠페인이 없었던 호주의 Tasmania 대학교와 오픈엑세스 정책은 없었지만 도서관의 활발한 기관리포지토리 캠페인이 있었던 Queensland 대학교 보다 강제형 오픈엑세스 정책을 수립하였던 QUT가 셀프아카이빙 되는 학술논문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³⁶⁾ 이러한 이유로 많은 대학들이 강제형 오픈엑세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강제형 오픈엑세스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학 내 구성원들이 오픈엑세스에 대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의사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검토한 오픈엑세스 정책에서 최종 오픈엑세스 정책을 승인한 기구는 대학의 연구위원회 등 대학차원의 기구들이었다. 이러한 합의과정 및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관내 구성원들에게 오픈엑세스 정책의 의미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 또는 기관리포지토리의 성공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관리포지토리의 경우 세 개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대학이 오픈엑세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강제성을 띠는 정책을 가지고 대학의 기관리포지토리를 운영할 지, 일단 기관리포지토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자료를 기탁받을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자일 경우 리포지토리를 운영하는 주체(대부분은 도서관)에 의하여 구성원들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캠페인, 자료제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독려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구성 요소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 구성요소를 앞서의 선행연구와 국외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을 기반으로 <표 10>과 같이 제안해보았다. 오픈엑세스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대항목들은 제출자료, 제출시

36) Arthur Sale, *op. cit.*

기, 제출자, 저작권, 요구수준, 예외, 이용, 오픈엑세스방법, 지원 등 9가지이다.

가. 제출자료

제출자료 항목은 다시 대상자료, 제외자료, 제출되는 자료의 버전(version), 파일포맷, 정책채택 이전 자료, 메타데이터, 초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픈엑세스 대상자료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동료심사제도가 있는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지만,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그 외에 다양한 자료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출로부터 제외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에서는 상업적 출판을 염두에 둔 단행본이나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을 제외자료로 정하고 있다. 제출대상이 되는 자료의 버전을 무엇으로 요구할 것인가는 리포지토리의 질적 문제와 관련된다.³⁷⁾ 즉, 피어리뷰를 거치지 않은 저자원고를 제출하도록 할 경우 리포지토리 전체에 대하여 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들어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정책 채택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도 오픈엑세스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책 채택 이전에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권고하지 강제하지는 않는다. 국내 세 개의 리포지토리는 기존의 발표 자료도 제출을 받고 있다.

나. 제출시기 및 제출자

제출시기와 관련한 두가지 옵션은 출판 후 즉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엠바고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두가지이다. 전자를 요구한다는 것은 저자가 논문 출판사 출판사와 대학의 이러한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판사가 이러한 계약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연구자에게 정책을 준수할 수 있는 학술지만 출판하도록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할 것이다. 국외의 학술지의 경우 셀프아카이빙에 대한 허용수준을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정보를 SHERPA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의 경우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제출자와 관련해서 우선 제출대상자는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을 준수할 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표적으로는 교원이며, 대학에 따라 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자로 하기도 한다. 제출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관리포지토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제출대상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예컨대, 기관리포지토리 담당자 등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 바쁜 학자들에게 IR에 논문을 기탁하는 것은 과외의 노력을 요구한다.³⁸⁾ 이들을 대신한 제출이 기관리포지토리의 성공률을 높일 수도 있다.

37) Kylie Pappalardo and Anne Fitzgerald, *op. cit.*

38) John S. Erickson, James Rutherford and Desmond Elliott, "The Future of the Institutional Repository:"

다. 저작권

저작권의 처리는 오픈엑세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리포지토리에 자료가 쌓이기만 하고 이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저작권 처리와 관련하여 처리 의무를 제출대상자로 할 것인가 리포지토리 운영자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제출대상자인 저자가 직접 출판시 해당 자료에 대한 권리처리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출판사와의 저작권 계약이 복잡해지거나 할 경우 대학 혹은 리포지토리 운영기관에서 저자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가 저작권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요구할 수 있다.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에 기탁하는 것에 대하여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할 것인가, 리포지토리 이용자가 재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도록 할 것인가,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기관의 정책에 맞는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용허락의 유형은 두가지로 제출대상자인 저자가 대학에 제출자료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방법과 저자가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허락하는 방법이다. MIT와 CBS 오픈엑세스 정책이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자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대학이 기관리포지토리 이용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제출자가 자신의 논문에 CCL등의 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것 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 요구수준 및 예외, 이용, 오픈엑세스 방법

자료의 제출에 대한 요구수준을 의무로 할 것인지 권고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형으로 정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것은 오픈엑세스 정책 자체가 의무형인가 자발형인가에 따라 결정지어진다. 그러나 의무형으로 하지 못할 경우 일부자료 예컨대 대학의 연구기금을 받아 생산한 논문 등에 대해서만 의무형으로 하는 등 부분적 의무형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

예외에 대한 규정에서는 대상자료의 제출 자체에 대한 예외와 일단 제출한 뒤 리포지토리를 통한 접근에 대한 예외 방식과 이러한 예외에 대한 허락을 누구로부터 받도록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리포지토리의 이용을 단순히 오픈엑세스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만 이용할 것인지 교원의 업적 평가 등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밝힐 필요가 있다. 교원의 업적 평가를 기관리포지토리를 통하여 할 수 있을 경우 제출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적평가 시스템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된다.

대학이 오픈엑세스를 수행하는 방법은 연구자들에게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도록 하는 것과 기관리포지토리에 셀프아카이빙 하도록 하는 것 두가지이다. 그러나 앞부분의 오픈엑세스

Making It Personal(1),” 2007, General Session Submission for Open Repositories 2008, Southampton, UK(1-4 April 2008).

스 유형에서 언급했듯이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의무화할 경우 교원의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은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을 권고하고, 대신 기관리포지토리에 셀프아카이빙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 지원

오픈엑세스 정책을 준수할 대상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을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출판비용을 지원하거나,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계약서 표준형식 등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발형 정책일 경우 기관리포지토리 기탁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탁을 많이 한 학과 등에 지원금 등을 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예컨대 2005년 포르투갈의 민호 대학교(University of Minho)에서는 연구자들이 셀프아카이빙 하는 자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³⁹⁾ 이 정책은 2년 후에 중단하였지만, 그동안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셀프아카이빙 하는 습관을 얻은 연구자들에게 더 이상 금전적 보상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한다.

<표 10> 대학의 오픈엑세스 정책 구성요소

대항목	소항목	설명
제출 자료	대상자료	• 어떤 유형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가? 예 : 도서, 도서의 챗터, 연구논문, 잡지기사, 신문기사, 학술대회발표자료, 진행중 논문, 데이터셋,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교수용자료, 특허자료, 미간행 저작물, 저작물 원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제외자료	• 특정자료를 제외하도록 할 것인가? 예 : 상업적 출판을 염두에 둔 단행본 등, 비밀정보가 포함된 출판물, 저자, 기관, 제3자의 법적 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자료들, 문화적으로 예민해서 제한되어야 할 자료, 특정 언어로 된 자료
	버전	• 제출대상 자료의 판(version)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예 : 출판전기사(preprint), 출판후기사(postprint), 출판사 최종 파일 등
	파일포맷	• 제출대상 자료의 파일 포맷을 정할 것인가?(PDF, 한글파일 등)
	정책채택 이전 자료	• IR 운영 이전에 출판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인가?
	메타데이터	• 원문제출시 입력해야 할 메타데이터는 무엇인가?
	초록	• 초록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할 것인가?
제출 시기	출판 후 즉시	• 출판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할 것인가?
	출판사 엠바고 인정	• 출판사의 엠바고 기간을 모두 준수하도록 할 것인가? • 6개월이나 1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설정해 놓을 것인가?
제출자	제출대상자	• 교원, 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기타 대학소속자 등 누구를 제출대상자로 할 것인가?
	제출책임자	• 제출에 대한 책임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대리인	• 도서관 사서 등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39) Enabling Open Scholarship, *Open Access Policies f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op. cit.

대항목	소항목	설명
저작권	저작권처리 의무	•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권 처리 의무는 누구로 정할 것인가?(제출책임자 혹은 사서?)
	저작권처리 내용	•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에 기탁하는 것에 대한 허락만 요구할 것인가? • 리포지토리 이용자가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만 요구할 것인가? • 재이용에 대한 허락을 요구할 경우 그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할 것인가? • CCL 등의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할 것인가?
	저작권처리 대상	• 포스트프린트인가? 프리프린트인가?
	저작권 관련 서비스	• 연구자가 출판사와 계약시 대학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합의서 등을 제시
	이용허락의 유형	• 저자가 최종이용자에게 직접 이용허락할 것인가? • 저자-리포지토리-최종이용자 순으로 이용허락할 것인가?
요구 수준	의무형	• 모든 자료의 기탁을 의무화할 것인가?
	부분형	• 일부자료의 기탁만 의무화할 것인가? (예를 들어 대학의 연구기금을 받아 생산한 논문 등)
	자발형	• 완전히 자발적으로 기탁하도록 할 것인가?
예외	제출 자체 예외	• 특별한 경우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접근의 예외	• 일단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리포지토리 내에서 접근만 제한할 것인가?
	예외 허락	• 예외에 대한 허락을 누구로부터 얻도록 할 것인가?
이용	교원업적평가와 오픈엑세스	• 교원의 논문출판 현황 분석을 기관리포지토리를 통해 할 것인가?
오픈엑세스 방법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출판	•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출판할 것을 권고할 것인가? 요구할 것인가?
	셀프아카이빙	• 셀프아카이빙만 요구할 것인가?
지원	APC 지원	•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시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지원
	제출지원	• 제출책임자를 대신하여 도서관이 대리제출해줄 것인가?
	저작권 처리 지원	• 저자가 출판사와 저작권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저작권계약서 표준형식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 필요한 경우 저자를 대신하여 도서관이(혹은 대학이) 출판사와 해당 논문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을 것인가?
	인센티브	• 자발형 정책일 경우 기관리포지토리 기탁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탁을 많이 한 학과 등에 지원금 등을 지원할 것인가?

VI. 결 론

학술커뮤니케이션과 대학은 어떤 관계일까? 학술정보의 생산과 출판 및 배포, 수집, 이용의 순환 고리 속에서 대학은 어떤 자리에 얼마만큼 연관되어 있을까? 대학의 구성원인 대학교수와 연구원, 대학원생은 학술정보의 주된 생산자이다. 이들 대학의 구성원들 집단인 학회는 학술지를 출판한다. 대학도서관은 이들 구성원을 위해 학술정보를 수집하고 이 구성원들에게 이용시킨다. 따라서 대학은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순환고리 속에서 적어도 생산, 출판, 수집, 이용과 관련된다. 학술정보를 생산하는 인구 중에서 대학의 구성원은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학문분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50%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오픈엑세스는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로서 특히 대학을 중

심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국외의 많은 대학이 대학 차원 혹은 단과대학이나 학과차원의 오픈액세스 정책을 수립하고 기관리포지토리를 구축하여 오픈액세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픈액세스는 그동안 다소 거시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대학에서 기관리포지토리를 구축하는 등 오픈액세스가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아마도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주된 역할자로서 대학이 대안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인 오픈액세스의 구체적인 전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국외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과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오픈액세스 정책을 수립할 때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는 이미 기관리포지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나 향후 오픈액세스 정책을 채택할 대학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